

인천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52073 판결 [압류등기말소]

전 문

원고A

피고인천광역시 남동구

변론 종결2015. 10. 8.

판결 선고2015. 10.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5,436,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인천직할시장은 1981. 6. 8. ~ 1989. 6. 30.에 걸쳐 인천 남동구 구월, 만수, 간석, 수산, 인천

남구 주안동 일부 토지(총 면적 : 3,785,916.7m²)를 대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사업명 : 구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인천직할시장은 1989. 6. 30.경 이 사건 사업 실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에 관한 환지처분을 완료한 후 환지처분으로 발생한 청산과도금(이하 '이 사건 청산금'이라 한다)을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분할 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1차분 납부기한 : 1992. 6. 30., 2차분 납부기한 : 1993. 6. 30., 3차분 납부기한 : 1994. 6. 30.)로, 연체이자는 연 12%로 각 정하여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인천직할시장은 위 결정에 따라 1989. 8. 26.경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중 하나인 인천 남동구 B 대 223.8m²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청산금 원금 53,273,000원을 1992. 6. 30.부터 1994. 6. 30.까지 3회에 걸쳐 각 17,757,660원씩 분할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청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인천직할시는 1990. 7. 31.경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고, 1990. 9.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권리자 인천직할시 명의(이후 2006. 2. 27. 피고 명의로 등기명의인표시가 정정되었다)의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청산금 원금 53,27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회 분할 납부 방식에 따른 각 1회분 원금 17,757,660원에 대한 각 해당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4. 12. 22.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미납 청산금 190,673,550원을 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 압류등기는 2014. 12. 23.경 2014. 12. 22.자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청산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이므로, 이 사건 청산금채권 중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4. 10. 23.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2009. 10. 24. 이전에

발생한 이자채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청산금 원금 53,27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1,963,800원 [= 53,273,000원 × (2009. 10. 24.부터 2014. 10. 23.까지 5년) × 12%]을 합한 85,236,800원만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

3)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청산금 미납을 원인으로 종전에 경로된 이 사건 압류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권 행사 제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부득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미납 청산금 전부인 190,673,55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4) 즉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90,673,550원에서 이 사건 청산금 중 일부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원고에게 납부의무가 남아 있는 청산금 85,236,800원을 초과한 105,436,750원(= 190,673,550원 - 85,236,800원)은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압류등기로 인하여 납부가 강제된 상황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위 105,436,75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산금채권에 관한 이 사건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청산금채권의 원금뿐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로 인한 이 사건 청산금채권의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 사건 압류 해지일인 2014. 12. 22.까지 계속되는 이상 이 사건 청산금채권 중 일부 지연손해금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청산금 징수와 관련된 법률 규정은 아래와 같다.

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68조의2).

한편,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제68조 제3항).

나)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1) 세무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독촉(납부 또는 납입의 최고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제28조 제1항, 제4항)

(2) 지방세의 징수권의 시효는 압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할 때에 중단하고, 이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을 경과한 때로부터 다시 진행한다(제50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

다) 국세징수법

(1) "체납자"라 함은 납세자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고,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제3조 제1항).

(2) 세무서장이 부동산 등을 압류할 경우 압류등기를 소관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하고(제45조), 그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가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제47조).

2) 국세징수법 제45조에 의한 압류는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고 하여 당연히 실효되지 아니하고,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 참조).

3) 원고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이 사건 청산금의 납부를 최고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산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990. 9. 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압류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가 2014. 2. 22. 이 사건 청산금 원금과 이에 대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전부를 피고에게 지급함에 따라 이 사건 압류등기가 2014. 2. 22.자 해지를 원인으로 2014. 2. 23.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산금채권에 관한 압류의 효력은 이 사건 압류등기가 마쳐진 1990. 9. 5.부터 위 압류 해지일인 2014. 2. 22.까지 유효하게 존속하고, 그 압류의 범위 또한 이

사건 청산금 원금 및 그 납부기한 이후로서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기간 동안 발생한 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범석

판사윤양지

판사김배현